

의안번호	제 2023 - 13호
의 결 연 월 일	2023. 5. 9. (제124차 회의)

보  
고  
안  
건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목 차

I. 양형위원회 개관	1
1. 설립배경 및 연혁	1
2.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8
3. 조직	8
4. 양형기준 설정 절차	10
II. 제8기 양형위원회 활동 결과	11
1. 제8기 양형위원회 임기	11
2. 제8기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	11
3. 제8기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12
III. 제9기 양형위원회 구성	48
1. 양형위원	48
2. 전문위원	49
3. 자문위원	50
IV. 2023년 운영지원단 주요 추진 업무	51
1. 양형기준 설정·수정 지원 및 각종 책자 발간	51
2. 양형연구회 활성화	52
3.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콘텐츠 추가 제작	54
4. 新양형기준시스템 운영	55
5. 강의 및 교육	56
6.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 및 해외 홍보	57
V. 2021년 선고 판결 양형기준 준수율	59

# I. 양형위원회 개관

## 1. 설립배경 및 연혁

### 가. 설립 배경

- 2004. 12. 사법개혁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제의 도입 건의 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2007. 1. 26.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
- 개정 법원조직법의 주요 내용
  -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
  - 2009. 4. 26.까지 최초 양형기준 설정 의무를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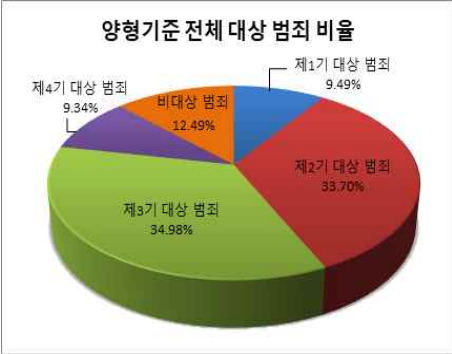
### 나. 연혁

-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이 2007. 4. 27. 시행되어 같은 날 양형위원회 출범
- 출범 이후 활동 경과

<b>【1기 양형위원회】</b>	- 2007. 4. 27. ~ 2009. 4. 26. - 위원장 김석수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양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 4. 24. 최종 의결</li> <li>• 2009. 7. 1. 시행</li> </ul>						
<p><b>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b></p>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caption>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caption> <thead> <tr> <th>범죄 유형</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 대상 범죄</td> <td>9.49%</td> </tr> <tr> <td>비대상 범죄</td> <td>90.51%</td> </tr> </tbody> </table>		범죄 유형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비대상 범죄	90.51%
범죄 유형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비대상 범죄	90.51%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b>누적비율 : 9.49%</b></p>							

<b>【2기 양형위원회】</b>		- 2009. 4. 27. ~ 2011. 4. 26. - 위원장 이규홍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0. 6. 29. 의결 • 2010. 7. 15. 시행
-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 2011. 3. 21. 의결 • 2011. 7. 1. 시행
- 살인범죄, 강도범죄,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1. 3. 21. 의결 • 2011. 4. 15. 시행
<p>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p>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b>누적비율 : 43.19%</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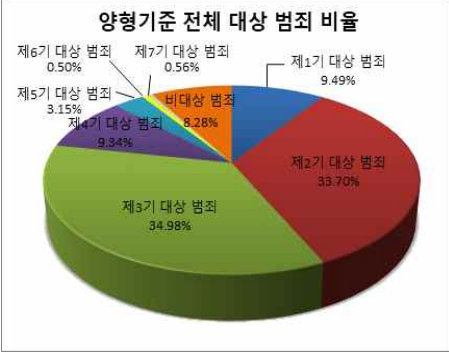
<b>【3기 양형위원회】</b>		- 2011. 4. 27. ~ 2013. 4. 26. - 위원장 이기수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2. 1. 30. 의결 • 2012. 3. 16. 시행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 2012. 6. 18. 의결 • 2012. 7. 1. 시행
- 선거범죄 양형기준		• 2012. 8. 20. 의결 • 2012. 9. 1. 시행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 2013. 2. 4. 의결 • 2013. 7. 1. 시행
- 살인범죄,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3. 4. 22. 의결 • 2013. 5. 15. 살인범죄 시행 • 2013. 6. 19. 성범죄 시행
<p>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p>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b>누적비율 : 78.17%</b></p>		

<b>【4기 양형위원회】</b>	- 2013. 4. 27. ~ 2015. 4. 26. - 위원장 전효숙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4. 3. 31. 의결 • 2014. 7. 1. 시행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 약취·유인·인신매매 수정 양형기준 시행 : 2014. 10. 1.)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 2015. 2. 2. 의결 • 2015. 7. 1. 시행												
- 식품·보건,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5. 4. 13. 의결 • 2015. 5. 15. 시행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b></p>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caption>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caption> <thead> <tr> <th>대상</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 대상 범죄</td> <td>9.49%</td> </tr> <tr> <td>제2기 대상 범죄</td> <td>33.70%</td> </tr> <tr> <td>제3기 대상 범죄</td> <td>34.98%</td> </tr> <tr> <td>제4기 대상 범죄</td> <td>9.34%</td> </tr> <tr> <td>비대상 범죄</td> <td>12.49%</td> </tr> </tbody> </table> </div> <p style="text-align: center;">※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b>누적비율 : 87.51%</b></p>		대상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34%	비대상 범죄	12.49%
대상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34%												
비대상 범죄	12.49%												

<b>【5기 양형위원회】</b>	- 2015. 4. 27. ~ 2017. 4. 26. - 위원장 이진강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6. 3. 28. 의결 • 2016. 5. 15. 시행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 2016. 3. 28. 의결 • 2016. 7. 1. 시행														
-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6. 7. 11. 의결 • 2016. 9. 15. 시행														
-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6. 12. 5. 의결 • 2017. 1. 15. 시행														
-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7. 4. 10. 의결 • 2017. 5. 15. 시행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2017. 4. 10. 의결 • 2017. 7. 1. 시행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b></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 대상 범죄</td> <td>9.49%</td> </tr> <tr> <td>제2기 대상 범죄</td> <td>33.70%</td> </tr> <tr> <td>제3기 대상 범죄</td> <td>34.98%</td> </tr> <tr> <td>제4기 대상 범죄</td> <td>9.34%</td> </tr> <tr> <td>제5기 대상 범죄</td> <td>3.15%</td> </tr> <tr> <td>비대상 범죄</td> <td>9.34%</td> </tr> </tbody> </table> </div> <p style="text-align: center;">※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b>누적비율 : 90.66%</b></p>		대상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34%	제5기 대상 범죄	3.15%	비대상 범죄	9.34%
대상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34%														
제5기 대상 범죄	3.15%														
비대상 범죄	9.34%														

<b>【6기 양형위원회】</b>	- 2017. 4. 27. ~ 2019. 4. 26. - 위원장 정성진																
-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8. 6. 11. 의결 • 2018. 8. 15. 시행																
-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8. 7. 23. 의결 • 2018. 8. 15. 시행																
-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2019. 3. 25. 의결 • 2019. 7. 1. 시행																
<div data-bbox="576 689 1026 1043"> <p><b>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b></p> <table border="1"> <caption>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caption> <thead> <tr> <th>대상 범죄</th> <th>비율 (%)</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 대상 범죄</td> <td>9.49%</td> </tr> <tr> <td>제2기 대상 범죄</td> <td>33.70%</td> </tr> <tr> <td>제3기 대상 범죄</td> <td>34.98%</td> </tr> <tr> <td>제4기 대상 범죄</td> <td>9.34%</td> </tr> <tr> <td>제5기 대상 범죄</td> <td>3.15%</td> </tr> <tr> <td>제6기 대상 범죄</td> <td>0.50%</td> </tr> <tr> <td>비대상 범죄</td> <td>8.84%</td> </tr> </tbody> </table> </div>		대상 범죄	비율 (%)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34%	제5기 대상 범죄	3.15%	제6기 대상 범죄	0.50%	비대상 범죄	8.84%
대상 범죄	비율 (%)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34%																
제5기 대상 범죄	3.15%																
제6기 대상 범죄	0.50%																
비대상 범죄	8.84%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b>누적비율 : 91.16%</b></p>																	



<b>【7기 양형위원회】</b>	- 2019. 4. 27. ~ 2021. 4. 26. - 위원장 김영란																			
-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0. 1. 6. 의결 • 2020. 2. 1. 시행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0. 4. 20. 의결 • 2020. 7. 1. 시행																			
-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 2020. 5. 18. 의결 • 2020. 7. 1. 시행																			
- 마약, 강도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0. 9. 14. 의결 • 2020. 10. 15. 시행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2020. 12. 7. 의결 • 2021. 1. 1. 시행																			
- 주거침입, 환경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 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1. 3. 29. 의결 • 2021. 7. 1. 시행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b></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caption>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caption> <thead> <tr> <th>대상 범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 대상 범죄</td> <td>9.49%</td> </tr> <tr> <td>제2기 대상 범죄</td> <td>33.70%</td> </tr> <tr> <td>제3기 대상 범죄</td> <td>34.98%</td> </tr> <tr> <td>제4기 대상 범죄</td> <td>9.34%</td> </tr> <tr> <td>제5기 대상 범죄</td> <td>3.15%</td> </tr> <tr> <td>제6기 대상 범죄</td> <td>0.50%</td> </tr> <tr> <td>제7기 대상 범죄</td> <td>0.56%</td> </tr> <tr> <td>비대상 범죄</td> <td>8.28%</td> </tr> </tbody> </table> </div> <p style="text-align: center;">※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b>누적비율 : 91.72%</b></p>			대상 범죄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34%	제5기 대상 범죄	3.15%	제6기 대상 범죄	0.50%	제7기 대상 범죄	0.56%	비대상 범죄	8.28%
대상 범죄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34%																			
제5기 대상 범죄	3.15%																			
제6기 대상 범죄	0.50%																			
제7기 대상 범죄	0.56%																			
비대상 범죄	8.28%																			

<p><b>【8기 양형위원회】</b></p>	<p>- 2021. 4. 27. ~ 2023. 4. 26. - 위원장 김영란</p>																					
<p>-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12. 6. 의결</li> <li>• 2022. 3. 1. 시행</li> </ul>																					
<p>-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3. 28. 의결</li> <li>• 2022. 6. 1. 시행(아동학대범죄)</li> </ul>																					
<p>-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7. 4. 의결</li> <li>• 2022. 10. 1. 시행</li> </ul>																					
<p>-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벌금형 양형기준 포함) -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4. 24. 의결</li> <li>• 2023. 7. 1. 시행 예정</li> </ul>																					
<div data-bbox="576 792 1027 1144"> <p><b>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b></p> <table border="1"> <caption>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caption> <thead> <tr> <th>대상 범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 대상 범죄</td> <td>9.49%</td> </tr> <tr> <td>제2기 대상 범죄</td> <td>33.70%</td> </tr> <tr> <td>제3기 대상 범죄</td> <td>34.96%</td> </tr> <tr> <td>제4기 대상 범죄</td> <td>9.34%</td> </tr> <tr> <td>제5기 대상 범죄</td> <td>3.15%</td> </tr> <tr> <td>제6기 대상 범죄</td> <td>0.50%</td> </tr> <tr> <td>제7기 대상 범죄</td> <td>0.56%</td> </tr> <tr> <td>제8기 대상 범죄</td> <td>0.39%</td> </tr> <tr> <td>비해당 범죄</td> <td>7.89%</td> </tr> </tbody> </table> </div>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b>누적비율 : 92.11%</b></p>			대상 범죄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6%	제4기 대상 범죄	9.34%	제5기 대상 범죄	3.15%	제6기 대상 범죄	0.50%	제7기 대상 범죄	0.56%	제8기 대상 범죄	0.39%	비해당 범죄	7.89%
대상 범죄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6%																					
제4기 대상 범죄	9.34%																					
제5기 대상 범죄	3.15%																					
제6기 대상 범죄	0.50%																					
제7기 대상 범죄	0.56%																					
제8기 대상 범죄	0.39%																					
비해당 범죄	7.89%																					

## 2.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의결기관
- 대법원 소속 독립 위원회

## 3. 조직

### 가. 위원장 및 위원

- 대법원장이 위원장 1인과 위원 12인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
- 위원은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검사 2인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호사 2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각 위촉)

### 나.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을 둠
-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최대 15인까지 둘 수 있으며, 임기 2년(연임 가능)
- 현재 법관 3인(수석전문위원 1인 포함), 검사 2인, 변호사 2인, 군법무관 1인,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6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

### 다. 운영지원단

- 양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81조의9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단 설치
- 운영지원단은 운영지원단장(판사)과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및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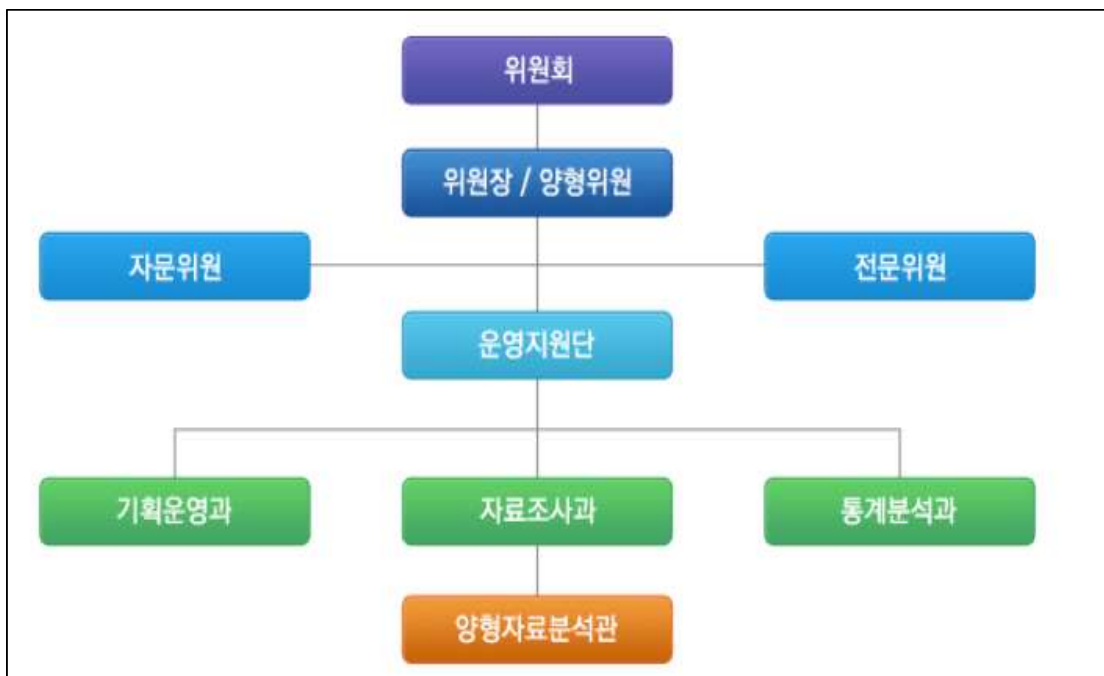
분석과로 구성

- 법원서기관 1명, 법원사무관 9명을 포함한 총 30명(양형자료분석관 포함)의 일반직원을 배치

#### 라. 자문위원

-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학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현재 10명)

#### 마. 조직도



#### 4. 양형기준 설정 절차

단 계	담당	내 용	
1	양형자료 조사·분석	운영지원단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의 확정기록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 및 분석
↓			
2	양형기준 초안 작성	전문위원	전문위원단은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3	양형기준안 의결	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
↓			
4	공청회 및 의견조회	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			
5	양형기준안 수정 및 양형기준 확정	위원회	위원회는 공청회 및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하여 양형기준 확정
↓			
6	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	위원회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

## II. 제8기 양형위원회 활동 결과

### 1. 제8기 양형위원회 임기

○ 2021. 4. 27. ~ 2023. 4. 26.

### 2. 제8기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

【2023. 4. 26. 기준】

지위	성명	사법연수원 기수	비고
위원장	김 영 란	제11기	前) 대법관, 前) 국민권익위원장
위원 (법관)	김 광 태	제15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원로법관
	구 회 근	제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 희	제26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 숙 희	제25기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상임위원)
위원 (검사)	이 주 형	제25기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김 선 화	제30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한 영 환	제20기	변호사
	안 정 호	제21기	변호사
위원 (교수)	김 혜 정	해당 없음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 수 진	제24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학식·경험)	박 준 우	해당 없음	MBC 보도본부장
	서 창 록	해당 없음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위원

### 3. 제8기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 가. 위원회 회의 등 개최

※ 양형위원 전체회의 15회, 공청회 2회, 심포지엄 3회, 국제 콘퍼런스 1회, 전문위원 회의 14회, 자문위원 회의 2회 개최

#### (1) 양형위원 전체회의(15회)

차 수	일 시	안 건
109차	2021.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기 양형위원회 출범식</li> <li>▪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등</li> </ul>
110차	2021.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기 양형기준 설정, 수정 대상범죄 등 선정</li> </ul>
111차	2021.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심의</li> </ul>
112차	2021.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설정범위, 유형 분류)</li> <li>▪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의결</li> </ul>
113차	2021. 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li>▪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li> <li>▪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심의</li> </ul>
114차	2022. 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의결</li> <li>▪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심의(적용 범위, 설정 대상 범죄)</li> </ul>
115차	2022.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li>▪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의결</li> <li>▪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의결</li> </ul>
116차	2022.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의결</li> </ul>

차 수	일 시	안 건
117차	2022.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li>양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li> </ul>
118차	2022. 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li> <li>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li> </ul>
119차	2022.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등)</li> <li>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등)</li> </ul>
120차	2022. 1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심의(설정 범위, 유형분류)</li> </ul>
121차	2022. 1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의결</li> <li>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의결</li> </ul>
122차	2023. 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심의(형종 선택의 기준,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의결</li> <li>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의결</li> </ul>
123차	2023. 4.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범죄 양형기준 의결</li> <li>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의결</li> <li>교통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li>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ul>

## (2) 공청회

회차	일 시	안 건
제17차 공청회	2022. 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li> </ul>
제18차 공청회	2023. 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li> <li>관세범죄 양형기준안</li> <li>교통범죄 양형기준안</li> </ul>



### (3) 심포지엄

명 칭	일 시	주 제
제6차 심포지엄	2021. 6. 21.	▪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과의 공동 심포지엄	2021. 11. 8.	▪ 젠더폭력범죄와 양형
제8차 심포지엄	2022. 6. 10.	▪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
2022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2022. 11. 28.	▪ 양형의 합리화 - 현황 및 과제

### 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 (1)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경과



#### (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개요

##### (가) 정비 원칙

순번	보호법익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1-1	개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2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1	개인 + 국가·사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2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국가·사회	-	-

-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의 달성, 비교법적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개인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 또는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이 타당함. 따라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고, 범죄군 특성에 따라 ①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에서는 이를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② 그렇지 않은 범죄군에서는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각 반영. 한편,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일반감경인자(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
- 개인적 법익과 국가·사회적 법익 모두가 보호법익인 사건에서는 각 범죄군의 특성에 따라 ①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와 동일하게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규정하거나, ②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만을 일반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규정
- 국가·사회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벌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특별

감경인자는 물론 일반감경인자로도 반영하지 않음

(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44개 범죄군 양형기준 분류 결정

구분	범죄군
1-1	살인 / 강도 / 횡령·배임 / 약취·유인·인신매매 / 사기 / 절도 / 지식재산권 / 폭력 / 교통 / 공갈 / 체포·감금·유기·학대 (1, 2유형) / 장물/ 권리행사방해 / 업무방해 (1유형) / 손괴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1유형) / 명예훼손 / 주거침입 / 배임수증재
1-2	성범죄 / 성매매 (1-가 유형) / 디지털 성범죄 (2, 3, 4, 5유형) / 체포·감금·유기·학대 (3유형)
2-1	선거 (3유형) / 방화 / 업무방해 (2유형) / 근로기준법 위반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2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 3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2유형)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2-2	식품·보건 (2, 3유형) / 성매매 (2-나 유형) / 도주·범인은닉 (1-2유형) / 디지털 성범죄 (1유형) / 위증 / 무고 / 공무집행방해
3	뇌물 / 공문서 / 사문서 / 식품·보건 (1유형) / 마약 / 증권·금융 / 선거 (1, 2, 4유형) / 조세 / 변호사법 위반 / 성매매 (나머지 유형) / 사행성·게임물 / 석유사업법 위반 / 도주·범인은닉 (나머지 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1유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환경

(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추가

- 일부 범죄에만 들어가 있던 일반가중사유 또는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라는 양형인자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명칭을 통일하고, 그 정의 규정도 정비하여 피해자가 있는 범죄(1-1, 1-2, 2-1, 2-2 범죄군)에서 일괄적으로 일반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설정
- 무리한 합의 시도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함

## (라) 정의 규정 정비

###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① 가해자 태도 요소로서 '진지한 반성'을 요구하고, ② 피해자 의사 요소로서 양형심리를 통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을 요구함

###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핵심 요소로서 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②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 회복 또는 그 확실시를 정하되, 종전 재산범죄에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의 기준으로 삼은 손해액의 약 2/3 이상은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임
- 정의 규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반성·뉘우침이나 합의 노력 없는 공탁 등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함

## 다.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 (1)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경과



### (2) 설정 범위

- 아동학대범죄는 형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하여 구성되는데, 그 기본범죄 자체는 대부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기존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더하여 추가한 범죄는 다음과 같음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아동학대살해)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 제1호의2(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
  -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중 미설정범죄

### (3) 유형 분류

-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은 신설하지 않고,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중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하여 그 안에 중유형, 소유형을 둠

- 아동학대범죄를 구성하는 기본범죄들을 모두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으로 포섭할 경우, 위 기본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및 유형분류의 수만큼 범죄유형이 파생되는 등 양형기준을 설정하기에 매우 어려움
- 양형기준의 각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대상의 추가, 양형인자의 신설 또는 수정,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제시되도록 하였음

#### (4) 권고 형량범위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는 가중 영역 하한과 상한을 모두 상향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종전 양형기준 중 중한 유기·학대	2월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수정 양형기준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 6월	<b>1년 2월 - 3년 6월</b>

- 행위 유형이나 아동의 성장 환경 등이 매우 다양하고,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은 현행 유지
  - 생명·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들(상해, 교통사고 치사상 등)의 가중 영역 상한이 2년에서 3년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되,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가중 영역 상한을 3년 6월로 상향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 기존 양형기준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신규 설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성적 학대	4월 - 1년 6월	8월 - 2년 6월	2년 - 5년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 6월 - 6년

- 성적 학대: ① 아동의 연령이 다양하고, 행위 태양도 언어적 학대부터 성적 접촉에 이르는 경우까지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을 고려, ② 각 영역의 상한은 형량 강화요청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19세 미만)’와 같이 정함, ③ 가중 영역의 상한(징역 5년)을 초과할 수 있는 죄질의 행위 유형(가령, 강간)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요건(강간죄)으로 기소되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아동매매: ① 선고사례 중 범행동기 등을 보면 입양이 대부분이나 영리 목적 알선인 경우도 있는 점, 아동매매 중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은 목적범인 인신매매와 그 성격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 ② 비록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10년으로 성적 학대와 동일하나, 성적 학대와 달리 벌금형이 없으므로 성적 학대의 형량범위보다 상향하여 설정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기본 영역 상한, 가중 영역 하한과 상한을 모두 상향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종전 양형기준	2년 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수정 양형기준	2년 6월 - 5년	4년 - <b>8년</b>	<b>7년 - 15년</b>

-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이므로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함
-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의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 있음

○ 처벌조항이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 신규 설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 아동학대살해의 신설 취지,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난 동기 살인’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초로 하되, 규범적 조정을 통해 각 영역에서 2년씩 상향
- 아동학대살해의 경우에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량범위를 적용하는 추가 서술식 기준을 둔

## (5) 양형인자

### (가) 특별가중인자

- 행위 태양이 ‘성적 학대’인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누범에서의 동종 전과에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도 포함

### (나) 특별감경인자

- 합의 관련 양형요소에 관하여, 아동학대 대유형에서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이 아닌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는, 훈육 또는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 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으므로,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 추가

### (다) 일반가중인자

- 일반가중인자로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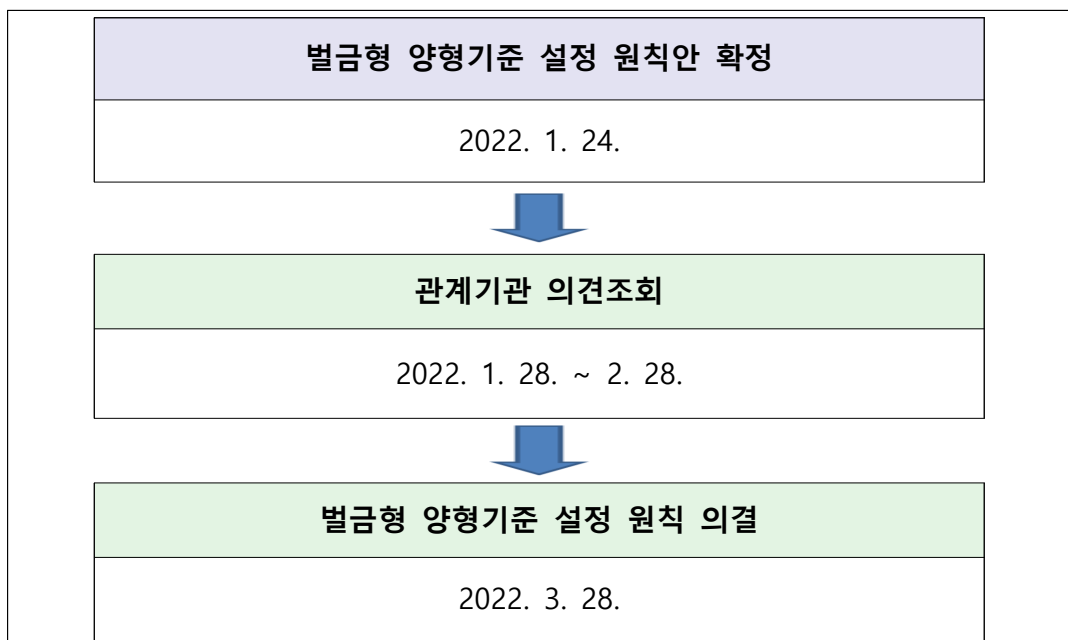


## (라)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함으로써 충실한 양형심리 유도
- 해당 범죄의 특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규정 신설

## 라.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 (1) 경과



## (2) 개요

### (가) 기본 원칙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일정한 원칙을 수립해 두고, 이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설정함: 이는 제8기 양형위원회 후반기 작업뿐만 아니라 향후 양형위원회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원칙임
- 범죄군 전체에 관한 일률적·통일적 양형기준은 각 범죄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양형위원회 설립 후 이어온 양형기준 체제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징역형 양형기준과 같이 개별적 양형기준을 선택함

### (나)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 벌금형 양형기준은 각 범죄군별 개별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므로, 형종 선택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개개 범죄군별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

### (다)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 징역형 양형기준에서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원칙과 동일하게, 양형 실무의 통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함
-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 등에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더함

### (라) 집행유예 기준 원칙: 양형 실무 축적 후 재논의

- 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범의 위험성 측면을 주로 고려하는 종전 징역형 집행유예와 출발점이 다름
- 집행유예는 징역형 중 60% 이상 활용될 만큼 빈번하나, 벌금형에서는 1% 남짓에 그칠 정도로 활용도 자체가 미미함

### (마) 적용 범위에 관한 원칙

- 즉결심판 사건은 벌금 20만 원 이하,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만을 다루어 양형기준 설정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단 벌금형 양형기준 적용을 배제함

- 약식명령 사건 역시 양형심리와 증거조사가 어려운 절차의 특수성,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적용을 배제함
- 공판절차회부사건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공판절차로 진행하여 판결로 종결되는 등 구공판 사건과 절차상 다른 점이 크지 않으므로, 벌금형 양형기준 적용 범위에 포함
- 구공판 사건은 공소제기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벌금형 양형기준 적용함

(바)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 교통범죄에 최초 설정하고, 점진적 대상 확대

- 2019년 구약식 전체 498,472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81,554건(1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46,588건(9.35%)으로 매년 벌금형 죄명 빈도 순위 1, 2위를 기록할 만큼 빈번함
- 벌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고액 벌금만 다투면서 항소하는 경우도 꽤 있으므로, 그 형량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3) 위 원칙 정리

구분	원칙 문구
기본 원칙	1.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 각 원칙하에 범죄군별로 설정한다.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2. 벌금형/징역형 선택의 기준을 정하되, 범죄군별로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3. 벌금형 권고 형량은 종전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영역별로 정하되,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 등에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더한다.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4.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은 추후 양형 실무를 축적 경위와 내용, 빈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적용 범위에 관한 원칙	5.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구공판 사건,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공판절차회부 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적용하되, 추후 약식절차와 즉결심리절차의 양형심리 방식 개선 상황, 양형자료조사 인력의 확충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용 범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	6.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교통범죄에 대하여 설정하고, 추후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간다.

#### 마.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 (1)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경과



##### (2) 설정 범위

- 처벌조항이 신설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새로이 설정
  - 2019. 1. 15. 신설된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 2020. 5. 19. 신설된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5조 제2항)
- 성범죄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추가 설정(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3) 권고 형량범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및 특수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변경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del>3년—5년6월</del> <u>3년 6월 - 6년</u>	5년 - 8년	<del>6년—9년</del> <u>7년 - 10년</u>

- 법정형 하한이 7년인 성범죄[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의 권고 형량범위와 위 각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상해/치상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참조

- 청소년 강간 권고 형량범위 변경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청소년 강간	<del>3년—5년6월</del> <u>2년 6월 - 5년</u>	<del>5년—8년</del> <u>4년 - 7년</u>	6년 - 9년

-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성범죄[군인등강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유사강간,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범위[감경영역(2년 6월 - 5년), 기본영역(4년 - 7년), 가중영역(6년 - 9년)]와 청소년 강간을 기본범죄로 하는 상해/치상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감경영역(3년 6월 - 6년), 기본영역(5년 - 8년), 가중영역(7년 - 10년)] 등을 참조
- 종전 청소년 강간은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치상범죄의 기본영역과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모두 같은 형량이 권고되는 불균형이 있어 이를 시정
-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여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 보다 다양한 행위태양이 존재할 수 있게 된 사정도 고려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특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변경

- 법정형이 상향된 사정, 법정형 하한이 같은 다른 성범죄의 권고 형

량범위 등을 고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del>1년6월 - 3년</del> 2년 6월 - 4년	<del>2년6월 - 5년</del> 3년 - 6년	<del>4년 - 7년</del> 5년 - 8년

#### (4) 양형인자

##### (가) 특별가중인자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상 성범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정조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의 피해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피해 감정을 고려하도록 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 확대
  - 군대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과 같이 조직이나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 지도, 감독, 평가 관계 등으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의 경우도 포함하도록 정의규정을 수정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균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중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의 정의규정 수정
  - 정의규정 중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

사하는 등)“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괄호 문구를 삭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나) 특별감경인자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합의 관련 양형요소로서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은 특별감경인자로 두지 않음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일반감경인자 「상당 금액 공탁」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수정

#### (다) 일반가중인자

- 실제 발생 사례를 예시로 추가하여 「인적 신뢰관계 이용」의 정의 규정 보완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환자
- 부하
- 신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차 피해 야기」를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로 규정
  - 기존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합의 시도 중 피

해 야기」를 「2차 피해 야기」로 수정하고, 그 정의규정에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추가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성범죄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특수성 고려

-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정의규정]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함으로써 충실한 양형심리 유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신설

바.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1)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경과





## (2)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① 관세포탈죄, ② 무신고 수입 등 범죄, ③ 무신고 수출 등 범죄, ④ 밀수품 취득 등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4개의 대유형으로 분류

## (3) 권고 형량범위

- 법정형, 형량분포,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및 규범적인 상향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도출

### 01<sup>1</sup> 관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2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02<sup>1</sup> 무신고 수입 등

###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5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나. 부정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3	5억 원 이상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6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03<sup>1</sup> 무신고 수출 등

###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억 원 이상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5년
3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나. 부정 수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부정 수출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04<sup>1</sup> 밀수품 취득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4) 양형인자

##### (가) 특별가중인자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관세사 제도의 목적,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의 관세사의 지위와 업무 등을 고려할 때, 관세사의 교사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세관공무원의 범행가담도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으므로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둠(대유형 2, 3, 4)
  - 관세범죄의 보호법익(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 확보), 통관절차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 양형실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범죄, 식품·보건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무신고 수입 등(대유형2)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국가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무신고 수출 등(대유형3)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국의 산업 또는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밀수품 취득 등(대유형4)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 또는 수입국의 산업이나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 관세법규의 복잡성과 기술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 환경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 관세범죄의 조직성, 형사정책적 필요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
- 관세포탈(대유형1)에서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 규정을 둠
  -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관세의 부과·징수권에 대한 침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정하기로 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관세법 제46조의 관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
-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무신고 수입 등(대유형2)에서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를, 무신고 수출 등(대유형3)에서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를, 밀수품 취득 등(대유형4)에서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를 각각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나마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품·보건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다) 일반가중인자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 관세범죄의 행정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세범죄 양형기준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각각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관세포탈(대유형1)에서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둬
  - 관세범죄의 보호법익(관세의 부과·징수의 적정),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세법 제27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일반감경인자

- ‘일반적 수사 협조’를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둬
  -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이지만, 관세범죄의 조직성, 형사정책적 필요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관세포탈(대유형1)에서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둠

-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도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기로 함

●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되어 포탈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관세법 제46조의 관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를 의미한다.

## 사.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

### (1)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 경과



### (2)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범죄로서 ①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②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③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을 설정하고 3개의 대유형으로 분류

### (3) 권고 형량범위

- 법정형, 형량분포,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및 규범적인 상향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형량범위를 도출함

#### 01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4월 - 1년	6월 - 2년6월	1년6월 - 4년

#### 02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 03 |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6월 - 1년4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 (4) 양형인자

#### (가)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둬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대유형1),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대유형3)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대유형2)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1유형)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1유형)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중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대유형2의 소 유형1):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둠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둠(대유형 1, 3)

- 경매·입찰방해 등 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참작하고 있고, 결과 불법의 정도가 크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려에서 규정하기로 함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대유형1)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대유형3)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정보주체의 정보가 침해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특별감경인자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둠(대유형 1, 3)

- 경매·입찰방해 등 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하고 있고, 결과불법의 정도가 작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대유형1)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정보통신망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대유형3)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통신비밀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둠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대유형1)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대유형2)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1유형)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나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대유형3)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일반가중인자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 사기, 횡령·배임, 공문서, 식품·보건범죄 등 다수 범죄에서 일반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고,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범죄 혐의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가중인자로 규정하여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억제하기로 함

(라) 일반감경인자

- ‘일반적 수사 협조’를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둠
  - 범죄의 조직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경과



### (2) 설정 범위 및 유형분류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148조의2 제3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양형기준 추가 설정
- 교통사고(대유형 1),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으로 대유형 분류

### (3) 벌금형 양형기준 및 형종 선택의 기준 설정

- 교통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벌금형 양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법관의 합리적 양형재량 보장 및 구체적 타당성 도모
- 형종 및 형량기준표에 ① '벌금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 ②

‘벌금형 또는 자유형의 선택을 권고하는 영역’, ③ ‘자유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을 제시하고, 여기에 적절한 서술식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 예컨대,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에서는 금고 8월 - 2년이 권고되지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음. 다만 이런 경우에도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금고형이 권고됨
-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에서도 금고 8월 - 2년이 권고되지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방식은 실제 법관의 양형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형종과 형량범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형종 선택에 기존의 권고영역과 양형인자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형종 선택과 형량범위의

이중 평가로 인한 비효율이나 혼선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

#### (4) 권고 형량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

### 02<sup>1</sup>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8월 10월 - 2년6월	1년 - 5년 2년 - 6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6년	4년 - 8년 5년 - 10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7년	5년 - 10년 6년 - 12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 (5) 양형인자

##### (가) 특별가중인자

○ 무면허·음주운전(대유형 3)에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음주측정 거부 의 경우)'를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둔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음주측정거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 도주 시도를 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특별감경인자

- 무면허·음주운전(대유형 3)에서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를 각각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둠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대유형 1, 2)
  - 교통사고 범죄에서 가해자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양형인자로 규정하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였음
- 생계형 범죄(무면허운전)
  - 양형실무를 반영하여 무면허운전의 경우 생계형 범죄를 일반감경인자로 참작

## (라) 동종전과

-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모든 유형에서 '동종 누범'을 특별가중인자로,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를 일반가중인자로 각각 규정함
- 동종 전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둠
  - 일반 교통사고(대유형 1),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1, 2)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한다.

-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위험운전 교통사고(대유형 1 중 중유형 나)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자.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

- 다음과 같은 정비 사항을 43개 범죄군에 반영
  -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의규정 통일적 반영
  -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피고인이 고령' 삭제

- 심신미약에 관한 서술식 기준 반영
- 형법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의 변경(농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작량감경 → 정상참작감경) 반영
-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신설에 따른 전과 관련 문구 수정

### III. 제9기 양형위원회 구성

#### 1. 양형위원

【2023. 4. 27. 현재】

지 위	성명	사법연수원 기수	비 고
위원장	이 상 원	제21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법관)	윤 준	제16기	서울고등법원장
	윤 승 은	제23기	법원도서관장
	유 영 근	제27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
	신 숙 희	제25기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상임위원)
위원 (검사)	이 주 형	제25기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김 선 화	제30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이 재 현	제18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채 근 직	제22기	변호사
위원 (교수)	강 수 진	제24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혜 경	해당 없음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원 (학식·경험)	손 관 수	해당 없음	KBS 보도본부장
	백 범 석	해당 없음	경희대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 2. 전문위원

【2023. 4. 27. 현재】

구 분	성 명	기수	소 속	직 위
법원	김 세 중	제30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용 민	제34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최 형 준	제3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검찰	강 선 주	제35기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부장검사
	김 한 울	제41기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최 익 구	변시 제2회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변호사
	김 현 아	변시 제3회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이 민 우	제40기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연구기획부장	군판사
교수/ 전문가	한 상 규	제24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준 혁	해당 없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 진 영	제37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호 진	해당 없음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 성 훈	”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형사법무디지 털센터장
	박 복 순	”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3. 자문위원

【2023. 4. 27. 현재】

분야	성명	경력
학계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언론계	이경원	국민일보 법조팀장
	김균미	서울신문 편집본부장(상무) 겸 편집인
	김주하	MBN 특임이사, 앵커
시민, 사회단체	박근양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
	장현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청년부회장/ 법무법인 예울 대표변호사

## IV. 2023년 운영지원단 주요 추진 업무

### 1. 양형기준 설정·수정 지원 및 각종 책자 발간

#### 가. 제9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작업 지원

- 제9기 양형위원회는 출범 직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여 양형기준 추가 설정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운영지원단은 양형위원 회의 및 전문위원 회의 지원, 양형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제9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작업을 지원
- 향후 일정
  -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2023. 6. 예정)
  - 양형기준 설정 작업 시작에 따른 양형자료조사 (2023. 7. 예정)

#### 나. 『2023 양형기준』 책자 발간·배포

- 『2022 양형기준』 책자 발간 이후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세범죄 양형기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과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담은 『2023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2023. 6. 각급 법원, 검찰, 국회 등에 배포 예정

#### 다. 『2022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 2022년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및 2023년도 활동계획을 담은 『2022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배포 예정

#### 라. 『2022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발간 및 양형위원회 보고

- 2022년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접수·처리 현황, 양형기준 준수

현황, 형량분포, 선고내역 등을 분석한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책자를 2023. 12. 발간하여 양형위원회에 보고함

## 2. 양형연구회 활성화

### 가. 추진방향

- 양형과 형벌, 형사재판에 관한 근본이념과 양형 관련 다양한 쟁점들을 연구, 공론화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양형기준과 양형실무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
- 법원조직법이 예정하고 있는 양형위원회의 양형정책 연구·심의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2018. 7. 16. 양형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창립(現 양형연구회 회장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고, 현재 법관, 검사, 교수, 변호사 등 283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
- 양형연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각계 회원들의 참여와 양형정책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

### 나. 구체적 방안

- 양형연구회 정기 세미나 개최
  - ▶ 연 2회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갈 예정(2018. 11. 1. 양형연구회 운영위원회 의결)
  - ▶ 2023. 6. 26.(월) 「AI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 예정
  - ▶ 2023. 11. 양형연구회 하반기 심포지엄 개최 예정
- 양형연구회 운영위원회 활성화
  - ▶ 양형연구회 운영계획 확정 및 연구주제 선정
  - ▶ 2023. 4. 3. 운영위원회 개최

#### 다. 10차 심포지엄 「AI와 양형」

- 심포지엄 일시·장소
  - ▶ 2023. 6. 26.(월) 14:00 ~ 18:00
  - ▶ 대법원 1층 대강당
- 심포지엄의 주제: 「AI와 양형」
- 심포지엄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출석 확인	
14:00-14:10	개회식	사회 : 양형연구회 기획간사
	인사말(각 3분)	1. 양형위원회 위원장 2. 양형연구회장
	회의 정리(4분)	
14:10-15:50 [100분]	◆ 제1세션 「소주제: 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 사회 : 신숙희(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양형연구회 부회장)	
14:10-14:50 [40분]	주 제 발 표	• 오세용(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4:50-15:05 [15분]	지 정 토 론	• 김정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5-15:20 [15분]	지 정 토 론	• 이종원(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
15:20-15:35 [15분]	지 정 토 론	• 이 진(엘박스 대표)
15:35-15:50	플로어토론	
15:50-16:10	중간 휴식	
16:10-17:50 [100분]	◆ 제2세션 「소주제: 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 수렴」 사회 : 조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양형연구회 부회장)	
16:10-16:50 [40분]	주 제 발 표	• 박혜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 수렴」
16:50-17:05 [15분]	지 정 토 론	• 윤지영(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 간		내 용	
17:05-17:20 [15분]	지 정 토 론	• 이원상(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17:20-17:35 [15분]	지 정 토 론	• 강태영(언더스코어 대표)	
17:35-17:50	종 합 토 론		
18:00	◆ 폐회		

### 3.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콘텐츠 추가 제작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당신이 판사입니다’)을 제작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한 국민들에게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양형 결정 과정에서 범죄사실 이외에 고려해야 할 여러 양형요소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
- 2018. 1. 2. 살인, 절도 오픈
- 2019. 3. 11. 강제추행, 사기 오픈
- 2020. 2. 3. 공무집행방해, 도주치상 오픈
- 2021. 12. 17. 상해, 방화 오픈
- 2022. 12. 2. 횡령, 마약 오픈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 대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콘텐츠 오픈에 맞추어 대법원 공식 Youtube 채널,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등에 프로그램 홍보
  - 대법원 1층의 법원전시관에 양형체험 프로그램 키오스크 설치 ⇨ 대법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체험 및 홍보
  - 각급 법원(법정방문 학생, 배심원후보자), 언론(대법원 출입기자), 사법연수원(중·고등학생 연수 프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육청,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방안 모색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콘텐츠 제작

- 기존에 제작된 범죄군(살인, 절도, 보이스피싱사기,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도주치상, 상해, 방화)에 체험 대상 다양화라는 체험자들의 요구에 응하고자, 2022년도에는 이용 관심도 및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콘텐츠(횡령, 마약)를 제작하여 2022. 12.

2. 오픈

- 2023년에도 국민적 관심도 및 범죄의 중대성 등 고려하여 범죄군을 선정하였고(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현재 제작 절차 진행 중임

- 예상 일정

- 3. 6.(월) ~ 4. 24.(수): 동영상 제작 대상범죄 선정 및 사건 선정
- 4. 24.(월): 사업계획서 결재
- 5. 29.(월): 입찰 공고
- 6. 30.(금) ~ 7. 3.(월): 동영상 제작 제안서 평가회
- 7. 10.(월): 계약 체결
- 7. 27.(목) ~ 8. 16.(수): 시나리오 작업
- 8. 16.(수) ~ 9. 1.(금): 웹페이지 업데이트 추가 계약
- 8. 19.(토) ~ 9. 2.(토): 동영상 제작
- 9. 21.(목) ~ 11. 10.(금): 시사회 및 시연회
- 12. 1.(금): 2023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웹페이지 오픈

#### 4. 新양형기준시스템 운영

○ 개요

- 2010년 개발된 양형기준시스템의 사용자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9년 3월부터 新양형기준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임

○ 시스템 개발 내용

- 사건정보 중 해당 사건명에 대한 범죄유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범죄군, 범죄유형, 적용법조, 양형기준 시행일 등이 자동으로 현출되게

하여 양형기준시스템 이용 편의성 증대

- 판결문작성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판결문 작성 편의 증대 ⇨ 양형 기준의 명시적 기재율 제고
-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과 연동을 통한 판결문 검색기능 추가 ⇨ 해당사건과 동일 죄명, 동일 적용법조, 동일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된 사건의 판결문 검색 가능
- 양형기준 시행 이후의 법률 개정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함(양형기준 시행 이후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기능 추가) ⇨ 개정 법률 내용에 대한 법정형 등 시스템에 반영
- 2023. 7. 1. 시행 예정인 관세범죄 양형기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시스템에 반영 중

## 5. 강의 및 교육

### 가. 양형기준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한 교육

-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신임법관연수, 형사재판실무연수 및 군사법원의 군판사연수 등 과정을 통해 양형기준의 취지와 내용, 적용방법 등을 교육

### 나. 양형기준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시민 교육

- 군판사,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양형기준과 함께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

## 6. 외국 양형위원회·사법부와의 교류 및 해외 홍보

### 가. 추진목적

- 외국 양형위원회 및 사법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공유
-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위원회 대외 홍보

### 나. 해외 출장

- 출범 이후 매년(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기간 제외)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4~5인이 외국 양형위원회 또는 해외 사법부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 증진

### 다. 「2022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개최

- 2022. 11. 28.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양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 (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를 대주제로 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 제1주제: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에서 보다 합리적인 양형을 실현하고자 추진한 주요 사법제도 및 정책의 내용, 그 성과 및 과제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 진행
- 제2주제: 「양형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Reasonable Sentencing: Future Challenges)」
  - 최근 양형 분야의 주요 쟁점인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 (Assessing Recidivism Risk Objectively)』,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에 관하여 우리나라, 미국, 독일 및 영국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 진행

#### 라. 영문 양형기준 책자 발간

- 양형기준 설정 관련 정책 수립 및 양형기준 제도 발전을 위해서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협력, 우리나라 양형기준 홍보 필요
- 「2020 양형기준」 책자를 번역한 「2021 영문 양형기준」 책자를 2021. 12. 발간하여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배부함

#### 마. 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 양형위원회 영문 홈페이지의 부정확한 내용을 바로잡고, 양형위원회의 최근 활동 내용을 반영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간결하게 개선
- 「2021 영문 양형기준」 책자를 전자책으로 형태로 수록하고, 각 범죄군의 영문 양형기준, 영문 양형기준 해설 등의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구성

## V. 2021년 선고 판결<sup>1)</sup> 양형기준 준수율

단위: %

위원회	범죄군	선고연도					전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1기	살인범죄	90.9	92.0(▲)	92.2(▲)	90.9(▼)	91.6(▲)	91.5
	뇌물범죄	82.7	75.2(▼)	77.1(▲)	77.0(▼)	87.9(▲)	79.5
	성범죄	87.4	86.9(▼)	86.2(▼)	86.5(▲)	89.0(▲)	87.2
	강도범죄	88.3	87.2(▼)	83.4(▼)	85.7(▲)	86.0(▲)	86.2
	횡령·배임범죄	94.7	92.8(▼)	94.2(▲)	93.9(▼)	93.5(▼)	93.9
	위증·증거인멸범죄	94.4	89.8(▼)	89.9(▲)	86.5(▼)	91.5(▲)	91.0
	무고범죄	96.8	97.3(▲)	95.7(▼)	97.3(▲)	96.7(▼)	96.8
	<b>소계</b>	<b>90.2</b>	<b>88.8(▼)</b>	<b>88.8(-)</b>	<b>88.9(▲)</b>	<b>90.4(▲)</b>	<b>89.4</b>
제2기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75.9	75.8(▼)	70.7(▼)	81.6(▲)	92.5(▲)	80.0
	사기범죄	85.4	84.0(▼)	85.7(▲)	86.7(▲)	87.8(▲)	85.9
	절도범죄	86.9	85.6(▼)	85.9(▲)	84.8(▼)	87.0(▲)	86.0
	공문서범죄	87.5	81.9(▼)	81.5(▼)	85.1(▲)	89.7(▲)	84.9
	사문서범죄	96.1	95.1(▼)	94.9(▼)	95.3(▲)	97.3(▲)	95.8
	공무집행방해범죄	92.6	93.3(▲)	92.5(▼)	92.1(▼)	94.1(▲)	92.9
	식품·보건범죄	58.8	79.5(▲)	77.2(▼)	71.4(▼)	85.4(▲)	71.3
	마약범죄	82.8	82.8(-)	81.8(▼)	84.1(▲)	85.2(▲)	83.3
<b>소계</b>	<b>86.6</b>	<b>86.0(▼)</b>	<b>86.5(▲)</b>	<b>87.1(▲)</b>	<b>88.6(▲)</b>	<b>86.9</b>	
제3기	증권·금융범죄	68.8	69.9(▲)	69.0(▼)	71.8(▲)	69.4(▼)	69.8
	지식재산권범죄	80.5	76.9(▼)	76.8(▼)	73.9(▼)	75.8(▲)	77.2
	폭력범죄	98.3	98.0(▼)	98.1(▲)	98.9(▲)	98.9(-)	98.4
	교통범죄	94.6	95.5(▲)	96.2(▲)	91.1(▼)	97.4(▲)	95.1
	선거범죄	72.9	88.5(▲)	80.8(▼)	88.7(▲)	85.8(▼)	83.5
	조세범죄	92.7	92.8(▲)	95.6(▲)	90.9(▼)	94.0(▲)	93.1
	공갈범죄	93.7	86.8(▼)	92.6(▲)	98.6(▲)	94.2(▼)	93.2
	방화범죄	93.0	93.1(▲)	96.7(▲)	93.5(▼)	96.0(▲)	94.3
<b>소계</b>	<b>95.5</b>	<b>95.8(▲)</b>	<b>96.5(▲)</b>	<b>94.9(▼)</b>	<b>97.6(▲)</b>	<b>96.1</b>	
제4기	배임수증재범죄	84.7	81.1(▼)	75.1(▼)	82.9(▲)	79.3(▼)	80.9
	변호사법위반범죄	76.9	70.3(▼)	85.6(▲)	83.2(▼)	81.8(▼)	78.3
	성매매범죄	86.6	84.9(▼)	87.9(▲)	88.4(▲)	85.4(▼)	86.6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94.1	90.4(▼)	93.5(▲)	94.7(▲)	94.6(▼)	93.5
	장물범죄	94.2	87.8(▼)	90.1(▲)	96.4(▲)	95.7(▼)	92.4

1) 2022년 선고 판결은 통계 취합 중이며, 2023년 12월 무렵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책자가 발간되어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임

단위: %

위원회	범죄군	선고연도					전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권리행사방해범죄	89.7	91.5(▲)	90.1(▼)	90.0(▼)	94.7(▲)	91.0
	업무방해범죄	92.2	88.6(▼)	90.3(▲)	90.0(▼)	94.2(▲)	91.0
	손괴범죄	94.7	93.5(▼)	96.0(▲)	94.2(▼)	97.0(▲)	95.0
	사행성·게임몰범죄	93.5	90.1(▼)	89.3(▼)	91.4(▲)	92.3(▲)	91.3
	<b>소계</b>	<b>90.6</b>	<b>88.4(▼)</b>	<b>89.9(▲)</b>	<b>90.7(▲)</b>	<b>92.2(▲)</b>	<b>90.3</b>
제5기	근로기준법위반범죄	96.9	97.3(▲)	97.1(▼)	96.1(▼)	98.3(▲)	97.1
	석유사업법위반범죄	92.9	92.2(▼)	94.4(▲)	85.7(▼)	90.0(▲)	91.7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92.2	92.1(▼)	95.2(▲)	93.6(▼)	95.7(▲)	93.9
	도주·범인은닉범죄	90.6	96.5(▲)	96.8(▲)	100.0(▲)	98.6(▼)	97.3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95.8	91.9(▼)	96.0(▲)	86.7(▼)	100.0(▲)	93.2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100.0	96.8(▼)	88.5(▼)	91.4(▲)	100.0(▲)	94.1
	<b>소계</b>	<b>94.9</b>	<b>95.4(▲)</b>	<b>95.6(▲)</b>	<b>94.6(▼)</b>	<b>97.3(▲)</b>	<b>95.6</b>
제6기	명예훼손범죄	-	-	100.0	97.2(▼)	99.0(▲)	98.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	100.0	93.1(▼)	92.3(▼)	9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	99.5	99.0(▼)	98.9(▼)	99.1
	<b>소계</b>	<b>-</b>	<b>-</b>	<b>99.5</b>	<b>98.6(▼)</b>	<b>98.0(▼)</b>	<b>98.7</b>
제7기	디지털 성범죄	-	-	-	-	81.6	81.6
	주거침입범죄	-	-	-	-	92.0	92.0
	환경범죄	-	-	-	-	85.7	85.7
	<b>소계</b>	<b>-</b>	<b>-</b>	<b>-</b>	<b>-</b>	<b>82.6</b>	<b>82.6</b>
<b>전체</b>	<b>90.3</b>	<b>89.9(▼)</b>	<b>90.7(▲)</b>	<b>90.5(▼)</b>	<b>92.2(▲)</b>	<b>90.7</b>	

※ 주 :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에는 '▼', 증가한 경우에는 '▲'로 나타냄.

- 연도별 양형기준 준수율을 보면 2017년은 90.3%였으나, 2018년 89.9%, 2019년 90.7%, 2020년 90.5%, 2021년 92.2%임
- 2021년 범죄군별 양형기준 준수율은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및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100.0%), 명예훼손범죄(99.0%), 폭력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98.9%) 순으로 높았고, 증권·금융범죄(69.4%), 지식재산권범죄(75.8%), 배임수증채범죄(79.3%), 디지털 성범죄(81.6%) 순으로 준수율이 낮았음

# 역대 양형위원회 구성 (출범 시 기준, 별첨1)

지 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b>위원장</b>	김석수 前대법관, 국무총리	이규홍 前대법관	이기수 前고려대 총장	전호숙 前헌법재판관 이대법전문장	이진강 前대한변협 회장	정성진 前법무장관	김영란 前대법관, 前국민권익 위원장	김영란 前대법관, 前국민권익 위원장
<b>위원 (법관)</b>	박송하 서울고법원장	구옥서 서울고법원장	김진권 서울고법원장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김광대 서울고법원장
	유원규 서울서부 법원장	서기석 서울고법부장	임종현 서울고법부장	여상훈 서울고법부장	이창형 서울고법부장	서태환 서울고법부장	강승준 서울고법부장	구회근 서울고법부장
	서기석 서울고법부장	성낙송 서울고법부장	김기정 서울고법부장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박정화 서울고법부장	박정화 서울고법부장	고연금 성남지원장	권 희 안산지원장
	성낙송 상임위원	김광대 상임위원	임성근 상임위원	이진만 상임위원	이규진 상임위원	천대엽 상임위원	김우수 상임위원	손철우 상임위원
<b>위원 (검사)</b>	홍경식 서울고검장	권재진 서울고검장	차동민 서울고검장	임정혁 서울고검장	김현웅 서울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	남기춘 대검 공판송무부장	정병두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유상범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
<b>위원 (변호사)</b>	이경재	서석호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태섭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상훈 대한변협 법제이사	최재혁 대한변협 법제이사	한명관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	김관기 대한변협 부회장
	조건호	조건호	이광수	이광수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곽정민 대한변협 법제이사	정영식 대한변협 법제이사	한영환
<b>위원 (교수)</b>	하태훈 고대 법대	하태훈 고대 법대	하태훈 고려대 법전문	오영근 한양대 법전문	박광민 성균관대 법전문	원혜욱 인하대 법전문	원혜욱 인하대 법전문	김혜정 영남대 법전문
	한인섭 서울 법대	조 국 서울 법대	이상원 서울대 법전문	서보학 경희대 법전문	정현미 이대 법전문	이주원 고려대 법전문	이주원 고려대 법전문	강수진 고려대 법전문
<b>위원 (학식 · 경험)</b>	신용진 MBC 보도본부장	고대영 KBS 보도국장	최금락 SBS 방송지원본부 장	이화섭 KBS 보도본부장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	이선재 KBS 보도본부장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
	남인순 한국여성 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연주 한국청년 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이연주 한국청년 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유성희 YWCA 상임이사	차병직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차병직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최은순 한국여성 단체연합 공동대표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2023년 양형위원회 예상 일정안 (별첨 2)

124차 회의	5. 9.(화)	● 출범식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	--------------------



전문위원 회의	5. 22.(월)	● 설정, 수정 대상 범죄군 검토
---------	-----------	--------------------



125차 회의	6. 12.(월)	● 설정, 수정 대상 범죄군 확정
---------	-----------	--------------------



※ 6. 26.(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양형자료조사	7월	● 설정, 수정 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	----	---------------------------



전문위원 회의	7. 17.(월)	● 양형기준 심의
---------	-----------	-----------



126차 회의	8. 7.(월)	● 양형기준 심의
---------	----------	-----------

※ 9. 18.(월) 양형기준 심의(127차 회의)  
 11. 10.(금) 양형위원회 회의(워크숍, 128차 회의)  
 2024. 1. 8.(월) 양형위원회 회의(129차 회의)